

[일련번호 : 23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업무 처리 부적정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■■■동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■■■동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등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7조(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의 발급 등)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[별지 제1호의 4서식]의 신청서와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.

「장애인복지 사업안내」 (보건복지부)에 따르면 대여·리스 차량의 경우 관련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‘대여 및 리스차량 표지’를 발급하여야 하며, 읍·면·동장은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■■■■동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중 대여 및 리스차량 표지 발급 시 관련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나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[표]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부적정 내역

연 번	발급 일자	장애인 본인			대리신청인			부적정 내역
		성명	생년월일	주장애	차량번호	표지유형	유효기간	
1	2407 30					대여/리스 본인용_주차 가능	9999123 1	유효기간 미설정
2	2402 02					대여/리스 보호자용_주 차가능	9999123 1	유효기간 미설정

#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■■■■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# 5. 조치할 사항

##### ■■■■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기 바랍니다. (주의)